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 12. 5.(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9년 11월 22일
- 회부일자: 2019년 11월 29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전국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2019. 5.22.)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 등의 사용대상자 및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기관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
 - 휴양소의 관리기관 변경(2019. 3. 1.자 조직개편)으로 휴양소 사용료 징수기준 추가(안 제4조제2항, 별표 5의2)
-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에 따른 협약사항 반영
 - 직속기관 등의 공동사용을 위한 내용 개정(안 제3조제2항)
- 현대화시설 확충 및 시설철거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 폐쇄 및 철거로 관련내용 삭제(안 제6조제2항, 별표 6)
 - 학생수련원의 현대화시설 확충에 따른 징수기준 마련 및 사용시설 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3)
 - 글램핑텐트, 안전체험관, 부대시설 징수기준 추가
 - 현 실정에 맞도록 명칭 변경(수련시설, 세미나실 ⇒ 운동장, 연수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와 이용 대상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임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협약 내용을 반영하고, 2019년 3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 징수 기준과 이용 대상자를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을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